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 세 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91
----------	---------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최세진, 강선영, 한상욱,
신찬호, 정장훈, 박주선,
고찬양, 김순옥, 홍재희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 재정립을 위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전체의 ‘단절’ 용어를 ‘보유’로 변경하여 인용조문 정비
(안 전체)

나.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협조부서 : 가족정책과

다. 입법예고 : 2023. 8. 28. ~ 9.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
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
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0. 7. 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양성평등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 고용업종에 경력보유여성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여성의 경력보유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경력단절여성 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